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회에서 신청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 보도 관련 조정신청 (손해배상 조정결정 - 피신청인 이익신청)

박 모 씨는 6.10 집회에서 자신이 경찰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의 상반신 사진이 보도된 데 대해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을 상대로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퇴근길에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뒤섞이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한 것일 뿐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나, 언론사가 신청인이 특정된 상반신 사진을 게재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은 신청인이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고, 사진촬영을 인지하였으므로 신청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가 몸싸움 사진을 보도한 것이므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나, 초상사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고 부득이 한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며 3백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조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 해당 사건은 법원에 자동 소제기 되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0, 26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2천만 원)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동아일보,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2.

처리결과 : 조정결정 (3백만 원)

내 용 : <사진설명> ‘6·10 범국민대회’가 열린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오전부터 주춧돌 측과 광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수시로 옥신각신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동아일보 : 『무대장비 반입싸고 野의원·경찰 몸싸움… 행사뒤 도로점거도』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11일자 8면)

1. 제 목 : “무대장비 반입사고 野의원-경찰 몸싸움… 행사뒤 도로점거도”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1일자 종합 A8면에 “무대장비 반입싸고 野의원-경찰 몸싸움… 행사뒤 도로점거도” 이라는 제목으로 주먹을 쥐고

경찰을 폭행하려 하는 신청인의 전면 사진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진에서처럼 신청인이 경찰을 폭행하려거나 폭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0

(2009서울조정261과 병합)

청 구 명 : 각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서울시 관악구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대표이사 김 재 호

조정대리인 사진부 부장 박○○,

사회부 차장 김○○

주식회사 동아닷컴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대표이사 김 일 흥

조정대리인 경영기획실 실장 최○○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009년 7월 17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들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9.

조정결정 후 처리결과

〈피신청인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자동소제기 됨〉

**농성 장소에서 불법행위 혐의로 시위대가 연행되었다는
보도 관련 조정신청 (기각결정)**

진 모 씨는 용산철거민 범국민대책위의 농성 장소에서 대책위 시위대 3명이 폭력 등 불법행위 혐의로 연행되었다고 보도한 연합뉴스에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시위현장에서 연행되었으나 대책위 관계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이며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에 신청인의 나이 등 인적사항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고, 신청인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6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5백만 원)

신 청 인 : 진○○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9. 6. 23.

처리결과 : 기각결정

보도내용

연합뉴스 : 『용산범대위 도로점거 시위…3명 연행』
제하의 기사 (2009년 6월 20일자)

내 용 :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가 20일 정부 사과를 요구하며 한강대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3명이 연행됐다. 용산범대위 관계자들과 사고 피해자 유족 등 1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앞에서 1시간 동안 정부 규탄 집회를 연 뒤, 한강대로 2개 차로에서 피해자 영정을 앞세우고 용산역 방향으로 약 1km 행진했다. 이어 남일당 빌딩 앞으로 돌아온 이들은 “경찰이 행진을 막으며 몸싸움을 하다 영정을 훼손했다”며 한강대로 서울역 방향 3개 차로에 앉아 경찰 사과를 요구하며 50여분 동안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오후 7시 15분께 진압 작전을 펼쳐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이 중 폭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연행했다. 이후에도 유

족 5명은 영정을 들고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1시간 가량 농성을 계속 했으며, 이 중 3명이 여자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여경이 2명 부상했고, 경찰 연행에 항의하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전종훈 신부도 탈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농성으로 서울역 방향 한강대로가 버스 차선 1개를 제외하고 모두 막혀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다 오후 8시 20분께 정상화됐다. 하지만 용산범대위 관계자 50여 명은 이후 남일당 빌딩 앞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오후 11시 현재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용산범대위는 올해 1월 20일 철거민 5명이 숨진 ‘용산 참사’가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일어났으며 정부 사과와 진상 재조사, 유족 보상을 요구해 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용산범대위 도로점거 시위…3명 연행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통신사는 본사가 기사를 제공하는 다수의 매체의 지난 6월 20~22일자 사회면 등에 “용산범대위 도로점거 시위…3명 연행”이라는 제목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이 중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연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폭력 등 불법행위를 한 시위대가 아니라 범대위 소속 80여 명이 유족과 함께 도로 점거 농성을 벌이는 시점에 10미터 정도 떨어진 약국 근처에서 단지 도로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 측으로 끌어들여 포위한 채 삽시간에 시민을 연행하려는 것을 주변의 다수의 시민들과 함께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 측에 고립된 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추모제 단 순참가자가 연행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66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진 ○ ○

서울시 용산구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박 정 찬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기사를 제공하는 통신사로서 기사를 제공하는 매체에 사회 기사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9년 6월 20일자 『용산 범대위 도로점거 시위...3명 연행』 제하의 기사에서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가 한강대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대책위 관계자 3명이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연행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자신은 대책위 관계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였으며 시위 현장에서 1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 연행되었을 뿐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 동일성을 알 수 있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에는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용산범대위)가 20일 정부 사과를 요구하며 한강대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3명이 연행됐다”고만 언급되었을 뿐 신청인의 성명이나 나이 및 직업 등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고, ‘용산범대위 3명’이 신청인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인격적,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별지]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재래시장 위기의 원인이 상인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보도 관련 조정신청 (반론보도 후 취하)

차명진 의원은 뉴스앤뉴스가 자신이 재래시장 위기의 원인이 시장상인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차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재래시장 관련 글을 피신청인 뉴스앤뉴스가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재래시장 위기 원인이 상인들에게 있다고 한 것처럼 기사화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였다. 조정기일 전,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을 반론으로 게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신청을 취하였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28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차 명 진 (국회의원)

피신청인 : 뉴스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뉴스앤뉴스 : 『차명진 의원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13일자 정치 섹션)

내 용 :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대다수 재래시장 가게가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한 것과 관련, 상인들의 ‘경영혼’이 부족한 데서 원인을 찾

아 논란을 자초했다. 상인들이나 전문가들은 벼랑 끝 위기의 원인을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진출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차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불티나는 야채가게> 라는 글을 통해, 자신이 잘 아는 야채가게가 재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고 있음을 거론 한 뒤, “왜 그럴까? 물건 파는 사람들이 손님과 맨투맨으로 붙어서 흥정한다. 물건이 아주 싱싱하다. 새벽장에 가서 직접 떼어 온다고 한다. 시간대별로 물건 값도 다르다. 저녁이면 대부분의 물건이 바닥 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다른 가게를 지목한 뒤, “사장님, 손님이 와도 관심 없다. 허구헌날 친구 몇 사람들과 아랫목에 앉아서 친목 도모하느라고 바쁘다. 벽면엔 한겨울에도 여름용 원피스가 즐비하게 걸려 있고 먼지가 뽀얗다”며 “하루는 내가 그랬다. ‘동대문에 가면

만 원짜리 예쁜 티셔츠 많은데 그거 좀 떼어다 파시죠’, 사장님은 ‘시간이 없어서’라고 고개를 돌린다. 그 가게 결국 문 닫았다”고 폐업을 상인 책임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래시장이 어렵긴 하다”며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 문제는 경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재래시장에 경영혼을 혹 붙여 넣을 방법은 없을까?”라며 재래시장 위기 원인을 거듭 상인에게서 찾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차명진 의원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 “경영혼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사실과 달라 (또는 차명진 의원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 관련 정정보도문)
2. 내용 : 본 매체는 7월 13일자 기사에 ‘차명진 의원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 라는 제목으로 마치 차명진 의원이 재래시장 위기 원인이 전적으로 상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명진 의원이 의도한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영업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고민하여, 최근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재래시

장에 경영혼을 붙여넣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사 내용이 차명진 의원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밝히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신청 후 보도문

뷰스앤뉴스 : 『차명진 의원의 반론입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21일자 정치 섹션)

내 용 :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본보 지난 13일자 기사 <차명진 “내가 아는 야채가게는 장사 잘돼”> 라는 기사에 대해 21일 반론보도문을 보내왔다. 다음은 반론 보도문 전문. <편집자 주>

위 보도(차명진 관련보도)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불티나는 야채가게’ 라는 글은 재래시장 위기의 원인이 상인들에게 있음을 지적한 것이 아니며, 최근 여러 이유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적극적이고 신바람난 마음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경영혼’을 붙여 넣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이를 가능하게 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환자 방송 관련 조정신청 (손해배상 합의)

신청인 구 모 씨와 가족은 피신청인(MBC-TV 닥터스)이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 입원 중인 자신과 가족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신청인이 마치 폭주족인 것처럼 방송하여 신청인과 가족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방송이 사회적 공익을 위한 취지의 프로그램이

고, 신청인에게 촬영사실을 알렸으며, 신청인과 가족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하여 신청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부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방송한 점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권고,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신청인과 합의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03

30,000,000원

청 구 명 : 손해청구 (3천만 원)

신 청 인 : 구 ○ ○ 외 2인

합의사항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7. 30.

처리결과 : 조정성립 (5백만 원)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9년 9월 4일까지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 본 건 조정 대상방송의 외주 제작사인 (주)○○과 소속 임직원 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보도내용

MBC-TV : 「닥터스」 프로그램 『응급실 24』(2009년 7월 6일)

내 용 : 터널 내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 관련 방송내용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손해배상금 5백만 원 지급〉

‘국정원 현 정부 인사실태 내사’ 보도 관련 조정신청 (정정 및 반론보도 합의)

신청인 국가정보원은 원장 지사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이뤄진 인사전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국민일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국가정보원은 정부 산하단체 및 각종 위원회 등에 대한 인사에 대해 내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원장도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전담팀도 구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조정대상보도는 제보와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사실보도라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내사여부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반론을, 팀구성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확인된 바 없으므로 정정보도할 것을 권고하자 양 당사자는 이를 수용해 합의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가정보원 (원장 원 세 훈)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9. 8.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국민일보 : (1) 『국정원, 현정부 인사실태 내사』 제하
의 기사 (2009년 7월 30일자 1, 3면)

내 용 : 산하 단체 · 공공기관 임원 등 4000명 자료
수집

원원장 지시...S라인 · 선진연대 출신 분포 조사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인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내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방위 내사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현 정부의 인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내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근원적 처방과도 연관이 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내사는 청와대가 임명한 장관 등 정무직 인사보다 각종 정부 산하 단체, 정부 직속 위원회,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들은 권력 주변부의 노른자위 자리로, 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했지만

그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어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 등 여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자리도 스크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내사 대상자들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주요 경력, 대선 당시 역할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내사는 지난 6월 초부터 본격화됐으며 대상자는 3000~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번 내사 작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TF(태스크 포스)를 꾸렸다. 국정원은 내사 자료를 현 정부의 인사 실태를 판단하는 주요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인사 독점 논란을 야기해 온 선진국민연대(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외곽 조직), ‘S(서울시청)라인’ 출신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위 진보 진영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얼마나 포진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 원장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실제로 선진국민연대나 ‘S라인’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청와대가 시정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내사가 국정원의 정상적인 정보 수집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내사가 현 정부 인사 실패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진보 인사 물갈이에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 『요직 독식 · 편중 시비 가릴 데이터 확보』 제하의 기사 (2009년 7월 30일자 3면)

내 용 : 국정원, 현 정부 인사 실패 내사 배경
끊임없는 잡음 차단... MB 국정운영에 힘 보태
기

파워게임 · 조사주체 논란... 물갈이 활용 가능
성도

국가정보원이 인사 전반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사 논란 검증할 데이터 필요=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논
란은 선진국민연대와 ‘S(서울시청 라인)’ 출신 인
사들의 요직 독식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현 정
부 들어 인사라는 전리품을 선진국민연대와 S라
인이 독차지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인사를 둘러싸
고 두 세력간 갈등설도 불거져 나왔다. 이 대통령
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형님 인사’도 논란이 됐
다. 개각이나 정부 부처 인사 때마다 고려대와
TK(대구·경북) 편중 시비도 계속됐다. 국정원
은 이 같은 인사 논란이 과연 사실인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직 독식·편중 시비를
가릴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내사는 인사 관련 잡음을 없앴으로써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
이다.

◆검증 사각지대, 권력 주변부 요직 내사=이번
내사는 사실상 전방위 조사다. 현 정부 인사 전
반을 훑어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한 신
상명세 수준을 넘어 성향 분석까지 이뤄지고 있
다. 특히 핵심 내사 대상이 각종 정부 산하 단체

와 정부 직속위원회의 고위관계자, 공공기관 임
원 등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고액 연봉과 상
당한 액수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데다 이권에도
가까운 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자리는 임명
하는 주체가 다양해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정치권의 ‘뺨’을 통해 일반 사기업에 진
출한 경우까지 내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기업
측에서 흘러나오는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
된다.

◆권력 핵심부 파워게임인가=청와대 핵심 관
계자는 29일 “청와대가 국정원에 내사를 지시한
게 아니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원 원장
은 이번 내사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다. TF(태스크 포스)의 보고도 직접 챙긴다고 한
다. 선진국민연대가 조사 대상으로 떠오르자 권력
핵심부에서 파워게임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
도 나왔다. 선진국민연대는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
인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만들고 주도한
조직이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 의원이나 박 차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
관계자는 “갈등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국정원 개입 놓고 논란 불가피=조사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인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정원이 김정운 후계자
설, 디도스(DDos) 복한 배후설 등을 흘린 것을
놓고 ‘국면 전환을 위한 북풍공작’ 의혹을 제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인사가 체
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하는 건 국가 기관이 당연
히 해야 할 업무”라며 “정치 개입이나 공작과는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번 내사 결과가 현 정부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면피용’이나 진보 인사 물갈이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당한 과문이 예상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정정보도문

2. 내용 : 본지 7월30일자 1·3면에 ‘국정원, 현정부 인사실태 내사’ 제목으로 익명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이루어진 인사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내사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은 현정부의 산하단체, 정부직속 위원회,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사전반에 대한 내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같은 내사를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국정원 내에 내사작업을 담당하는 별도의 TF(태스크 포스)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의 ‘현정부 인사실태 내사’ 관련 기사내용은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잡습니다. 관련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인용, 보도함으로써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끝.

합의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국정원, 인사실태 내사관련 보도 부인

나. 내용 : 본보는 7월 30일자 1, 3면에 게재된 ‘국

정원 현정부 인사 실태 내사’ 제하의 기사에서 익명의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인사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내사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관련, 현 정부의 산하단체, 정부 직속위원회,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임원 등의 인사전반에 대해 내사를 한 사실이 없고, 원세훈 국정원장도 이같은 내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내에 내사작업을 담당하는 별도의 TF(태스크 포스)가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21일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국민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8월 21일까지 <국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민일보 : 『국정원, 인사실태 내사 관련 보도 부인』
제하의 기사 (2009년 8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라디오 공개방송에 참석한 신청인의 사진 보도 관련 중재신청 (손해배상 중재결정)

양 모 씨는 라디오 공개방송을 방청중인 자신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방송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하였다며 M.net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한 사실을 인정, 신청인과 함께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는 중재신청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중재부는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중재결정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청 구 명 : 손배청구 (1천만 원)

피신청인 : 엠넷미디어 주식회사

신 청 인 : 양○○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7-1

피신청인 : M.net

대표이사 박 광 원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
원을 지급한다.

접 수 일 : 2009. 7. 14.

처리결과 : 중재결정 (1백만 원)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2008년 7
월 29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보도내용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M.net : 「스캔들」 프로그램 (2009년 6월 17일)

내 용 : <생략>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정이유 : 피신청인 엠넷미디어 주식회사는 이 사
건 보도에서 CBS 라디오 공개방송에 참석한 신청
인의 초상을 촬영하여 방송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
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보도의 동기
와 목적, 피신청인 매체의 영향력, 피신청인 언론
사의 규모,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 당사자

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4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양○○

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재결정 후 처리결과

2009. 7. 15.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모자이크 처리를 부실하게 하여 피해자를 특정한 방송 관련 중재신청 (손해배상 중재결정)

송 모 씨는 폐놀 피부 박피 수술 피해 관련 방송에서 피해자 인터뷰에 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내보내면서 모자이크를 부실하게 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피신청인은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하여 피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음을 인정, 신청인과 함께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중재부는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매경TV은 손해배상금 230만 원을, YTN은 15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중재결정했다. 지면 관계상 매경TV 신청건만 수록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4, 55

20,000,000원

청 구 명 : 손해청구 (2천만 원)

피신청인 : 송 ○ ○

결정문

신 청 인 : 매경TV, YT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54

접 수 일 : 2009. 8. 24.

청 구 명 : 손해청구

처리결과 : 중재결정

신 청 인 : 송 ○ ○

(매경TV : 230만 원, YTN : 150만 원)

서울시 강남구

보도내용

피신청인 : 주식회사 매일경제티브이(mbn)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30

대표이사 장 대 환

중재대리인 정 ○ ○

mbn : 『아기 피부 되려다... ‘폐놀 박피’ 의사 2명
기소』 제하의 보도

내용 : <생략>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9월 4일
까지 금 2,3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 피신청인은 향후 본 건과 유사 사건을 보도할 경우 본 건 방송 중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이 포함된 화면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한다. 신청인 관련 화면을 사용할 경우 보도 1회당 금 5,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이유 : 1. 이 사건 보도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경제티브이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mbn> 2009. 8. 3. 08:00, 10:00, 13:00, 15:00 「아기 피부 되려다... '폐놀 박피'의 사 2명 기소」 제하의 보도에서 폐놀 성분을 이용한 박피 시술의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인터뷰 중 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뷰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달라는 조건 하에 인터뷰를 승낙한 것인데, 신청인의 초상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인터뷰 당시의 예상 방송횟수를 초과하여 방송되어 동의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2009. 8. 11. 당 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316)을 하였다가, 2008. 9. 24. 조정심리 진행 중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따라 중재부의 결정에 종국적으로 따르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르게 되었다.

2. 판단

초상권 및 음성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 및 음성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 사람이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이나 기타 신체적 특징, 음성에 대하여 함부로 촬영 및 수집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권리이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나 음성을 촬영 및 수집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경우 초상권,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촬영 및 수집 과정에서 공표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위 권리들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본 건 방송 인터뷰에 동의했고 보도 당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신청인의 초상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다수의 언론사들과 동시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옷에 마이크를 꽂은 채 발언하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일응 신청인이 초상 및 음성에 대한 촬영 및 수집, 공표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 검증한 본 방송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신청인의 초상에 대해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 뿐 안구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 부위의 윤곽선이 노출됨과 동시에 음성은 변조되지 않은 채 13초 가량 방송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보도의 대상이 신청인임을 알 수 있게 보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인터뷰 당시 신청인의 승낙 범위를 벗어난 공표라 할 것이고, 결국 본건 방송이 폐놀 성분의 박피 치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술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본건 보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하여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방송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 고자 하는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승낙 범위, 보도의 목적, 피신청

인의 규모 및 사회적 위치, 신청인의 나이 및 직업, 신청인 초상 및 음성의 노출 시간, 보도 이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 삭제 등의 후속 조치 등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위자료 액수는 금 2,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아가 신청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방송으로 인하여 장래 입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추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4.

중재결정 후 처리결과

〈손해배상금 230만 원, 150만 원 각 지급〉

